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2차가해범죄 및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 전담 수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22명(경감 4명, 경위 9명, 경사 8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으로 인천영종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7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26명, 경위 11명, 경사 16명, 경장 19명, 순경 9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경찰청 및 전라남도경찰청의 명칭을 광주경찰청 및 전남경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 기정 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10.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관”을 “인권감사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사관)”을 “(인권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관”을 “인권감사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261개”를 “262개”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621명”을 “6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17명”을 “518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광주광역시경찰청란 및 전라남도경찰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서울특별시경찰청란 다음에 광주경찰청란 및 전남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중 ““광주광역시경찰청”은 “광주경찰청”으로” 및 ““전라남도경찰청”은 “전남경찰청”으로”를 삭제한다.

광주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별표 2 중 광주광역시경찰청란 및 전라남도경찰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서울특별시경찰청란 다음에 광주경찰청란 및 전남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광주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전남경찰청	목포경찰서, 여수경찰서, 순천경찰서, 나주경찰서, 광양경찰서, 고흥경찰서, 해남경찰서, 장흥경찰서, 보성경찰서, 영광경찰서, 화순경찰서, 함평경찰서, 영암경찰서, 장성경찰서, 강진경찰서, 담양경찰서, 곡성경찰서, 완도경찰서, 무안경찰서, 진도경찰서, 구례경찰서, 신안경찰서

별표 2의 인천광역시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인천중부경찰서”를 “인천제물포경찰서”로, “인천강화경찰서”를 “인천강화경찰서, 인천영종경찰서”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024”를 “2,04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353”을 “1,375”로 하며, 총경 이하 “1,333”을 “1,35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397”을 “134,47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943”을 “130,011”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9,837”을 “129,905”으로 하며, 일반직 계 “4,360”을 “4,367”로 하고, 4급 또는 총경 이하 “4,340”을 “4,347”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경찰청장 밑에 대변인 및 <u>감사관</u> 각 1명을 두고, 경찰청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경무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인권</u> <u>감사관</u> ----- ----- -----.
제6조(<u>감사관</u>) ① <u>감사관</u> 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u>감사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 8. (생략)	제6조(<u>인권감사관</u>) ① <u>인권감사관</u> ----- -----. ② <u>인권감사관</u> ----- -----. 1. ~ 8. (현행과 같음)
제42조(경찰서) ① 시·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u>261개</u>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③ (생략)	제42조(경찰서) ① ----- ----- ----- 26 <u>2개</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경의 정원은 62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의 정원의 합은 5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 622명-----

-----.

③ -----

----- 518명-----
-----.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24</u>	<u>2,046</u>	+22
경찰공무원 계	<u>1,353</u>	<u>1,375</u>	+22
·	·	·	
·	·	·	
총경 이하	<u>1,333</u>	<u>1,355</u>	+22
·	·	·	
·	·	·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34,397</u>	<u>134,472</u>	+75
경찰공무원 계	<u>129,943</u>	<u>130,011</u>	+68
•	•	•	
•	•	•	
총경 이하	<u>129,837</u>	<u>129,905</u>	+68
•	•	•	
•	•	•	
일반직 계	<u>4,360</u>	<u>4,367</u>	+7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4,340</u>	<u>4,347</u>	+7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98